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뜸을 들인 양성평등 · 성폭력예방 지침서가 이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감리교회 안에서는 여러 건의 목회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사회에서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온몸을 던지는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올해 3월에 열린 감독회의에서도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신학생과 목회자 진급과정, 연수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결의했고, 8개의 연회에서도 목회자 준회원 진급교육에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자고 하는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성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이 지침서가 그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지침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양성평등한 교회공

동체"는 현재 우리의 교회가 차별적이거나 위계적이지 않은지 돌아보고 평등과 평화 ·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세부적인 지침을 수록했습니다. 2부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실었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과거 성폭력 운동의 결실과 선진적인 교회여성들의 노고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1부는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8차 총회 공식채택 문서, 1999)를, 2부의 성폭력 부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성폭력 방지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개념과 매뉴얼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교회성폭력 부분은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2005)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과거의 주장과 제안이 교회에 확산되지 못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교회는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감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평등과 평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느낍니다. 그 이끄심에 겸손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이 지침서를 함께 수정하고 아이디어를 내준 1기, 2기 양성평등위원님들, 교회성폭력대책소위원님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성평등TF팀, 매뉴얼 작업에 함께 해준 교회성폭력TF팀과 감수해주신 김민영 소장님(다시함께상담센터) · 조중신 소장님(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상담연구소)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지침서가 나오도록 재정 후원을 해주신 감독회장님과 선교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 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숙, 홍보연, 황창진

발간사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4

01

양성평등한 교회공동체

1 교회가 양성평등해야 하는 이유 12

2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 17

– 관행 17

– 말 20

– 여성참여 27

02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참회와 결단 34

1 성폭력 37

– 성폭력이란? 37

– 성폭력의 범주와 정의 38

–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40

– 성희롱 42

2 교회 성폭력 44
– 교회 성폭력이란 44
– 교회 성폭력의 특성 45
– 목회자 성폭력과 친족성폭력의 유사성 49
– 목회자의 성적비행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과 경계 문제 51
– 교회 성폭력의 유형 52
3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56
–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법 56
– 교회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63
–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법 67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 68
– 교회 성폭력 대처 매뉴얼 71
성희롱 가해자 매뉴얼 71
가해자 주변인 매뉴얼 72
피해자 가이드 74
교회공동체 매뉴얼 82
목회 바로 알기 십계명 84

참고자료 86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87

01

양성평등한 교회 공동체

1. 교회가 양성평등해야 하는 이유

2.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

1.

교회가 양성평등해야 하는 이유

'양성평등'은 단순히 남녀 성별간의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배제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예수께서는 모든 생명을 '평등'과 '존엄'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은 더 이상 여성들의 문제(women's issue)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인간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문제'(Christian issue)입니다. 또한 그 어느 종교 개혁가보다도 여성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실천한 존 웨슬리의 전통을 성숙시키는

'감리교의 문제'(Methodist Issue)입니다.

현 시대에서 양성평등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집단이 현재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평등은 양적인 면에서의 평등과 질적인 면에서의 평등이 모두 이루어질 때 진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동등한 조건하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회들을 적극 이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끌어 주면서 더불어 걷는 느린 걸음이 필요합니다.

집단이 얼마만큼 평등한지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 사회나 집단의 '결정기구'(decision making body)와 '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서 양성이 얼마만큼 공평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결정기구인 '국회'에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비례로 참여하고 있는지 봐야합니다. 20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으로 전체 300명 중 17%입니다. 이는 국제의원연맹(IPU)에서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기준,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2.7%입니다. UN이 권고하는 여성 의원 비율은 30%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감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인 '총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2016년 1월 14일 통과된 법에 따라 연회, 총회, 입법의회의 대표의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여 현재 총회의 약15%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할당제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실행부위원회나 각 국위원회 등에는 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불균형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결정기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봉사하는 힘을 부여받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그 힘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 예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26-28)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7) 함께 창조되어 똑같이 하나님처럼 존귀했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서로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는 차별을 낳았고,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도 창조 때의 정의롭고 평등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산은 낮추시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배고픈 이, 병든 이, 소외된 이, 여성, 어린이들의 힘을 북돋우시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겐 회개와 나눔의 삶을 촉구하셨습니다.(눅4:18)

예수의 뜻을 받든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부자나 가난한 이, 남자나 여자가 종족, 신분, 계급, 연령, 성 등의 벽을 허물고 각자가 가진 역량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였습니다. 평등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예수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의 한 몸에 참여한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평등한 동역자였습니다.

● 차별과 위계 구조를 넘어 평등과 생명공동체로

그러나 오늘의 우리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삶을 나눴던 출애굽 공동체와 나눔의 관계를 실현했던 예수 공동체에서 일탈하여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경직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똑같이 존중되는 가운데 협력해서 일하라고 받은 직

분들은 위계관계를 나타내는 직급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타고난 역량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오직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을 하도록 고정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가르치고 전도하던 전통은 사라지고 남성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반면 여성은 봉사하고 안내하는 일로 역할이 제한되었습니다.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은사를 발휘하지도, 자신의 존재를 즐거워하면서 생명 꽃을 피우지도 못했고 교회는 결국 소수의 지도자와 남성이 주도하는 활기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경직된 조직에서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은 소리 없이 봉사하고 순종하면서도 소외돼 왔으며, 때로는 심리적, 물리적, 성적 폭력을 당하고도 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조직에서 벗어나 평등과 나눔의 생명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않는 한, 이 같은 외침은 공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또한 세상에서 존재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2.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

우리의 교회 문화에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성과 약자를 억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해왔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무심코 행해왔던 관행들과 말 그리고 제도들 속에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차별적인 의식과 제도들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행 /

그동안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의 섭리인양, 진리인양 행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사회문화의 차별적인 습관일 뿐임을 깨닫고 이를 평등한 문화

로 바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하여

1. 여성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고 대표성을 나타내는 일이나 주체적으로 할 일들을 남성의 역할로, 단순해 보이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로 나눌 때 그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남성은 주체, 여성은 보조라는 고정관념을 벗고 각각의 능력과 사명에 따라 일할 수 있게 합시다.

교회는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억눌린 삶의 경험, 다양한 생각을 소리내서 이야기하도록 북돋웁시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제반 영역에 반영합시다.

2. 남성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잡다한 봉사를 여성들이 기꺼이 한다고 해서 여성만의 일로 미룰 때 여성은 과중한 부담과 억압을 떠맡게 되고 남성은 신앙적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신앙실천으로 알고 잡다한 일을 함께 나눠 합시다.

예를 들어 교회 행사 때 안내와 꽃다발 전하는 일이나 예배나 행사 후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은 여성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남녀 함께 나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문화에 대하여

1. 여자는 죄가 크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성서의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여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며 억압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2. 예수께서 여성들을 대하신 태도를 본받읍시다.

기독교는 남존여비의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여성들, 심지어 이방여성이나 창녀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시며 그들의 신앙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대로 여성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며 격려합시다.

3. 남녀는 동역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18의 돕는다는 말은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시121:1,2)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듯이 남녀 인간은 서로의 구원을 돕는 동역자요, 동료입니다.

4. 여성에게도 지도자가 되는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교역자를 청빙할 때 또는 장로는 세울 때 여성을 소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배제가 없어야 합니다.

5.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성적 대상화하지 맙시다.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여길 때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엄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물리적, 심리적, 성적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 말 /

말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돌아보고 평등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서

1. 남녀를 가르고 억압하는 말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등의 말은 쓰지 맙시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남녀 성별로 고정된 역할만을 강요하여 개인의 고유함과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여성을 비하하는 말

'여자가 뭘 하느냐',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살림이나 잘해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북돋우는 말을 찾아내 의식적으

로 사용합시다.

3. 여성혐오를 드러내어 규정짓는 말

김치녀, 된장녀, 맘충 등 여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말들을 삼갑니다.

4. "은혜롭게 하자"는 말

흔히 교회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 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은혜롭게 하자"는 말을 자주합니다. 문제와 갈등을 무마하고 누군가 말 못하고 소외된 채로 지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젊은이와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읍시다.

5. "여자가 참으라"는 말

인내가 미덕인 상황이라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참자고 말합시다.

6. 하나님이 남성, 지배자라는 느낌을 주는 말

하나님은 하나의 호칭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부장적 군주나 아버지를 넘어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상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표현합시다. 친구 하나님, 연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정스런 하나님 등등

7. 교회 행사 때 사용하는 남성적인 군사용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성적이고 강자 중심적인 의식과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초대하는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용어인 총동원주일, 전도폭발 이라는 용어보다 '생명나눔잔치', '이웃초청 한마당'. '전도축제' 등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적인 용어를 창조합시다.

8. 힘을 상징하는 말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력, 물리력 등이 지배해 온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도 힘을 상징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싸워 이기고 정복하자는 식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감싸 안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언어들을 사용합시다. 사랑, 공존, 자비, 나눔, 평화, 연민 등의 공존과 상생의 삶을 지향하는 말들을 적극 개발합시다.

예배 때 사용하는 말에서

1.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

성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이사야 49:15-16).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

하리라..."(이사야 66:13).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저희를 고치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는..." (호세아 11:1-7).

또한 성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지혜자의 모습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여 기도 중간에 의미 없이 '아버지'를 연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무의식에 '하나님은 아버지' 곧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개인기도나 공중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면이나 혹은 다른 모든 아름다운 특성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2. 남성 중심적인 말

한국 교회 강단 설교는 주로 남성 목사가 맡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 남성 중심적 사고가 회중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남성 목사들은 종종 군대경험을 예화로 들면서, 군복무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이유가 되는 듯 말하거나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힘의 문화에 대해 비판 없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길들여진 생각을 무심코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삶의 자리와 차별적 삶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겨야 합니다"라거나 여성 성도들에게 "설거지는 해놓고 나왔냐"하는 식으로 조심 없이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교의 청중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여성청중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남성 시각에 치우친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교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

성서를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든지 부도덕한 교회 혹은 유혹자를 여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에 대해 '여성이 본래 더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사악하다'는 식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성서에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을 전체 상황과 문맥에 맞게 해석하여 본문의 의도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며, 성서 기자가 받은 가부장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여성을 유혹자 혹은 육체적이며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모든 잘못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들을 삼갑시다.

4. 여성과 여성의 일을 비하하는 예화

예화란 설교자가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여성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집안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논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여성이 집안에

서 하는 가사노동과 양육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나"하는 식으로 여성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말도 잘못된 여성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여성 비하적 여성관을 심어주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삼가도록 합시다.

5. 전통적인 현모양처상을 강요하는 말

많은 설교자들이 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 여자의 일생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고귀하다며 현모양처의 미덕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먹이고 애정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모성을 강조하여 그것을 여성만의 성역할로 고정한다면, 가사와 양육문제가 여성만의 몫으로 남게 되므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중의 짐을 주게 됩니다. 모성은 여성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지녀야 할 품성이므로 누구든지 기회가 되는대로 이것을 실현하도록 일깨웁시다.

성서 인물 중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산 여성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드보라나 에스더가 있었고, 예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마르다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많은 여성들, 초대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브리스길라, 뵈뵈, 유니아 등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로서만 아니라 선지자나 예수의 동역자로서 주체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을 설교에 등장시켜서 여성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6. 예배에서 남성 중심적인 말을 들었다면

우리 교회의 정서상 설교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표현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와 듣고 말하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공부, 교회교육 할 때 사용하는 말

1. 성차별적 가치관을 주는 언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성경공부나 예배, 교육을 할 때 무심결에 "남자는 이러저러해야 한다", "남자가 한번 말을 꺼냈으면...", "남자답게!"라든가 "여자답지 못하게!", "남자들은 씩씩하게, 여자들은 예쁘게 대답하세요!"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씩씩하게, 강하게, 터프하게' 행동하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고 '예쁘고, 얌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는 것은 여자다운 것이라는 말은, 성역할을 고정하고 나아가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씩씩함, 얌전함, 멋짐, 훌륭함, 그밖에 어떤 속성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성의 것과 여성의 것을 구별하여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2. 여성의 외모를 일컫는 말

여성들에게 예쁘다는 칭찬은 자칫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받는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여성의 외모 외의 또 다른 인간적인 특성에 대해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성서의 여성인물들에 대해 가르치자

성서는 대부분 남성기자가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 속에서 썼기 때문에 남성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신앙심 깊고 훌륭한 사람을 예로 말할 때 남성인물들을 그 예로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성 중에는 별로 두드러지는 인물이 없고 남성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하기 쉽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여성인물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서 여성들이 신앙의 본을 삼게 하고 억눌린 여성들에게 힘을 줍시다.

/ 여성참여 /

교단 총회 차원에서

1. 총회와 각 회의구조에 30% 이상을 여성대표로 합니다.

우리 감리회는 현재 여성참여 15% 할당제를 장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각 회의구조에 여성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고 평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의 여성참여가 균등히 이루어져야 하며,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회와 총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본부 국위원회 등 모든 회의구조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여성장로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 감리회는 역사적으로 여성안수에 있어서 선진적인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보다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각 교회는 장로 중 여성장로를 30% 이상 선출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여성지도력을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3. 본부 각국 총무 등 실무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합니다.

본부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성인지적 관점[1]을 지닌 정책을 세우고, 실무책임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합니다.

4. 각종 교역자 모임과 교인 교육 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남성 혹은 여성들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 차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역자 진급 교육과 정회원 평생교육 등 교역자 훈련과 장로 진급과정과 사경회, 임원교육 등 평신도 교육에 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합시다. 이때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 강사와 여성설교자를 적극 활용합시다.

5. 감리회 책자 발간 시 여성필자가 30% 이상 되게 합니다.

본부에서 발간하는 매일기도서, 공과 등 모든 교재에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여성 집필진이 30% 이상 되도록 제도화하고 성평등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개체 교회 차원에서

1.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 폭을 넓힙니다.

최고 의결기구뿐 아니라 교회 각 부서에 여성과 청년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기구나 부서장의 30% 이상은 여성이 맡도록 그 방안을 강구합시다.

2. 여성이 다양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줍니다.

부엌 당번과 안내 등을 도맡다시피 한 여성들이 지도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예배, 행사 등에서 사회, 행사책임 등을 맡을 수 있게 적극 훈련하고 기회를 줍시다.

3.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준비된 여성이 없는데 왜 굳이 할당제가 필요하냐?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여성들의 참여와 지도력의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제도적으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성지도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간 박탈된 기회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스스로 할당제를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교회여성들은

1. 침묵을 깹니다.

비중 있는 일을 결정할 때일수록 여성들의 참여가 적기 마련입니다. 장로, 기획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들은 발언의 주도

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나, 소수인 여성들은 공적으로 말하는 일에 익숙지 않아 남성들에게 대신 말하게 하거나 아예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여성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자기 목소리 내기, 자기 이야기하기를 훈련합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며, 필요하다고 생각할 땐 침묵을 깨고 책임 있게 발언합시다.

2. 주체성을 확립합니다.
여성은 과거 오랫동안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왔으므로 스스로 책임 있는 인물이 되려는 경향이 적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성이 책임적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살고자 노력합시다.

3. 스스로를 존중하고 여성과 연대합니다.
여성은 많은 경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다른 여성을 과소평가 합니다. 반면에 같은 말이라도 남성이 말하면 더 신뢰합니다. 이는 여성지도력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성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합시다.

4. 다양한 여성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여성교역자의 목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교역자들의 잠재력의 고양은 여성평신도의 지도력과 함께

자라갑니다.

5. 여선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교회 내 여성교인들만의 조직은 여성의식을 높이고 여성지도력을 배출할 수 있는 주요 자치조직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역자가 여성조직의 회장을 임명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없애고,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조직이나 교역자의 조언을 구하되, 여성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합시다.

6. 여성지도력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과 교회의 전망을 모색합니다.

여성 모임 시, 다양한 여성지도력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성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스스로 삶을 개척해 온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전망을 열어나갑시다.

7. 주요직책을 맡을 여성후보 발굴에 주력합니다.

지도력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성청년, 여성장년 조직의 지도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기구와 정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후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세워나갑시다.

교회교육에서

1. 평등교육을 실시합니다.

성평등한 삶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이며 위계적인 교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교우들을 대상으로 평등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체 교회문화를 바꿔가기 위한 평등교육을 실시합시다.

2. 개체 교회를 초월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여성교인이 교회 밖에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가지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염려하여, 여성이 외부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단의 여성들이 서로 만날 때 다양한 경험을 나눔으로 신앙을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으며, 여성문제에 대해 폭넓게 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킵시다.

3. 교회 교육에서 성인지적 예산[2]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1 |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 gender perspective)이란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남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등장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전동차 손잡이를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다양화하는 것 등입니다.

2 |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의 여성 총대의 숫자가 할당제를 통해 갑자기 늘게 되었을 때 경험이 부족한 여성총대들을 위한 예비교육을 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에 성인지 예산 편성은 필수입니다.

02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참회와 결단

1. 성폭력

2. 교회 성폭력

3.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참회와 결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과 불의와 폭력,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성폭력에 대한 죄를 참회합니다.
성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존엄한 인권에 대한 침해요, 불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불의요, 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폭력 범죄를 그치게 하고 피해자를 더 큰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게 하며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윤

리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하지 않았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이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부장제와의 유착을 끊어내도록 교회개혁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性)에 대한 교회의 왜곡된 가르침과 가부장성으로 인해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되도록 한 교회의 잘못을 간과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깨어지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입 다물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침묵을 조장하여 성폭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적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신학전통, 성서해석, 교회의 구조와 관행을 문화적 폭력으로 고백하고 성차별주의를 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 입장을 정립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폭력 근절의 과제를 교회 선교의 중심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신학적 입장 표명과 구체적 행동강령을 반포하며, 신학교육 과정에 평등한 양성회복과 올바른 성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신처 등의 운영과 대안활동에 착수하며, 특히 기독교와 교회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를 밝혀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극복하는 일에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가해자에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결단합니다.

1. 성폭력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거 성폭력은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죄라고 여겨졌으나 실은 남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언동을 말합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을 도구로 하여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몸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권폭력입니다. 연령, 성(gender), 지위 등에 근거한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 대해 저지르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정의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성 또는 남성으로 성별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교육받습니다.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으로 포장되고 여성들의 거부가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문화는 성폭력을 은폐하기 쉽습니다. 여성에게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학습되는 반면 남성이 여성을 도구화하고 지배하는 성적 행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성폭력 공포를 확산하여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쉽습니다.

/ 성폭력의 범주와 정의 /

성폭력(sexual violence)

성과 관련된 육체적 ·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1. 성폭행(sexual assault, rape)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성적 삽입행위 유무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 간음, 강간미수 등이 포함됩니다.

2. 성추행(sexual molestation)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강제추행)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폭행 협박이 없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성희롱(sexual harassment)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봉사 요구 등을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1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성폭력 범죄의 실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 교사, 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성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사회적 학습에 따라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남성의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충동이 일어난다고 강간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통념일 뿐입니다.

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이 통념은 남성을 동물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면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5.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대중매체나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 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매체를 비판하고 근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쉽게 무력해져 강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죽거나 다칠 위험을 불사하고 저항하기보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대다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은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함으로써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 성희롱(sexual harassment) /

성희롱 예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성희롱을 당할 경우 피해자는 적개심, 모욕감 등으로 정서적 ·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뿐만 아니라 두통, 울화병 등 신체적 이상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업무 능력도 저하되는 등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란

1.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교회 성폭력

/ 교회 성폭력이란?[1] /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따라서 교회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합니다. 교회 성폭력이란 교회나 기독교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교인이나 고용된 목회자(부담임 목사, 전도사 등)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 범주에 넣어 처벌해야 합니다.

/ 교회 성폭력의 특성 /

위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 성폭력은 여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특수성들은 이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특수성 중 하나는 왜곡된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과 성차별적인 교회의 관습의 영향입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대부분 전통적 유교적 여성상을 내면화한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성중심의 성서해석이나 성차별적인 교회관습은 순종하고 인내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관습은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수성은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목회자상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점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종교적 행위로 자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가 문제를 인식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믿고 따르는 교인들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가부

장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관계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갖는 여성의 경우, '하나님의 대변자'인 목회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의문을 느끼면서도 목회자의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 점이 일반 성폭력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특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의 지도자와 신도 간의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둘째, 교회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행위가 성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영적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와 동일하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목회자의 속임수와 '영적 길들임'으로 인해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처럼 보이는) 화간

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넷째, 교회 성폭력은 위계적 교회구조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며, 증거를 보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농락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교단 법에 호소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장애가 된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 현재 교회 성폭력을 대하는 교단과 교회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비난받게 되는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는 하지만 교회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

러 여성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다양한 교회활동을 통해서 지속되며, 가해자인 목회자는 피해여성을 길들여 성폭력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도록 하여 저항하지 않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지어는 10년에서 20년을 넘은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의 숫자도 한 교회에서 보통 2명 이상이고 한 예에서는 40-50명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째, 교회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에 영적인 어려움이 추가됩니다. 피해여성 자신이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신앙적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의 종, 영적 아버지라고 믿었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거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마귀라고 비난하는 가해자나 교인들의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신앙적 위기는 일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더 이상 어떤 목회자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여덟째,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거

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합니다. 교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되고, 교인들도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 목회자 성폭력과 친족성폭력의 유사성 /

1) 목회자의 성폭력에는 항상 목회자와 신도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신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목회자의 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아버지에게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2) 목회자의 성폭력은 친족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 목회자와 피해 신도 사이가 매우 가깝고 자주 접촉하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어떤 방어도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는 쉽게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3) 피해자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목회자로 부르고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부모 자녀간의 친족성폭력과 비슷합니다.

4) 피해자가 경험하는 수치감과 죄책감도 친족성폭력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드러날 때 돌아오는 비난과 위험부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다는 죄책감, 분노, 혼란스러움을 갖게 되며, 저항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수치감과 죄책감을 갖고 사건 모두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비밀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친족성폭력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6) 친족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폭력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경우만이 세상에 드러날 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발각될 때까지 오래 지속되고 숨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비록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친족성폭력의 피해자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성폭력이 드러날 때 아버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도 감정적 지지를 얻기보다는 미움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성폭력 피해자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등 개인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8) 교회 성폭력은 남성 가해자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는 점에서 친족성폭력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는 묵인, 은폐, 혹은 문제를 서둘러 진화하려 하며, 심지어 명예훼손죄로 맞고

소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폭력이 친족성폭력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과 예방책 및 치유방법에 있어서도 친족성폭력을 다루는 수준에서 교회 성폭력을 다루어야 합니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아야 하듯이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힘을 실어주는 말과 태도로써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 목회자의 성적비행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과 경계선 문제 /

목회자의 성적 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관계에서의 힘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상담자와 성도/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는 교인끼리의 관계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인간의 관계에는 이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목회적 역할에 있어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멘토로서, 또한 적어도 권위 인물로 여겨집니다. 한 사람은 권위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위기에 의해 힘을 잃고 있거나 상처입기 쉬운 상태에 있다면, 두 사람은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하듯이 목회자는 전문가적인 행동과 윤리의 기준을 지켜나갈 책임을 갖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성도와의 성적 친밀성을 주도한다거나 그것에 반응한다면, 심각한 경계선

침범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책임은 신도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교회 성폭력의 유형[2] /

상담소에 접수된 교회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가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한 여신도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 횟수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개인상담, 심방, 안수나 안찰, 입신 등의 치유행위나 종교체험을 빙자 또는 악용한 경우가 많으며,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수종위원'제도나 '안마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체로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형, 위력형

-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하여 강간 미수한 경우
-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2. 결혼/애정 빙자형

– 결혼을 빙자하여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접근하여 유혹하며 성폭행한 경우
– 아내와 목회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라며 접근하여 성폭행한 경우

3. 종교체험 빙자형

–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성추행한 경우
–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성폭행한 경우
–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성폭행한 경우
–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경우

4, 치유 빙자형

–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폭행한 경우
–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5. 교육, 상담 빙자형

– 성교육을 한다며 청소녀와 미혼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경우
– 홀로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 준다며 불러내어 모텔로 끌고 가 강간

하여 임신케 한 경우

6. 협박형

–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경우

교회 내 성희롱 실제 사례

1. 언어적 희롱

| 목사 설교 중 |

– "여자들이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 돼!"(월경하는 여성들은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여자 신학생들 주관 채플에서 한 A교단 총회장 목사의 설교 중)
–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 "여름에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젖꼭지 새카만 게 다 보여. 그런 옷 입고 오면 되겠냐?"(모교단 목사의 설교 중)

| 일상에서(교회 여성청년들에게) |

– "짧은 치마 입지마라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다."
– "아 그럼 이제 슬슬 기도 빡세게 해야겠네! 슬슬 자궁 말라비틀어질 나이잖아"
–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엉덩이가 커서 애를 잘 낳겠다고 했어요."

– “여자가 35세면 재혼 상대밖에 안 된다.”

– “커피는 젊고 예쁜 ○○가 좀 타 줘야지”

2. 육체적 희롱

– “탁구 칠 때 장로님이 허리에 손을 두르는데 너무 싫었어요.”

– “교육목사님이 싫다는 데도 억지로 끌어서 자기 무릎에 앉게 했어요.”

– “예배 후에 목사님과 악수하는 데 너무 오래 잡고 흔드는데 손을 빼지도 못하고 불쾌했어요.”

3. 시각적 희롱

– “찬양팀 연습에 좀 달라붙는 옷을 입고 갔는데 남자 청년들이 아래위로 훑어보는데 수치스러웠어요.”

– “교회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구역질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1 | ‘교회 성폭력’은 처음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교회 내 성폭력’으로 명명하여 불렀으나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나 목회자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 신학교 등에서 목회자와 신도의 위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교회 성폭력이라고 바꾸어 부르기를 제안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100여 건의 교회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 분류한 것입니다.

3.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법 /

목양적 지원

목회자나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접한 교인들이 안심하고 교회지도자를 찾을 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지도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용서 할 수 있는가?' 목회자는 이런 혼란 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도와 영적인 상담, 성서연구를 통해서 도울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지도자 자신이 성폭력 주제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지도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평소에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 교인들로 하여금 평소에 성폭력상담소나 관련 기관에서 훈련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성폭력 관련 상담소나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 목회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지켜줄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더 이상의 폭행이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여성 피해자들은 남성 목회자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목회자나 평신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피해자를 돕는 경우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도움을 주는 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적 지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성병이나 성기 주변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력 전문 병원에 다녀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특히 강간피해의 경우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 있는 시간이 72시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거나 아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대 몸을 씻지 마십시오. 샤워 등으로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은 옷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합니다. 우선 몸에 난 상처를 살펴봅니다. 손톱 밑을 검사하여 혹시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 등을 확인합니다. 외성기와 내성기를 검진합니다. 증거확보나 진료를 위한 것입니다. 또 혈액 채취를 합니다. 소변검사와 임신여부도 합니다.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성폭력은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3년도에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 고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의 경우 10년이며, 강간치상의 경우는 15년입니다. 또한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

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DNA증거 등의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 수사절차에서 |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의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조사 내용을 비디오 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검사로부터 기소를 했는지 통지받을 권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사실과 이유서'를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재판 전에 증거보전을 받을 권리 등

| 공판절차에서 |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 가해자에게 법정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권리, 비공개 재판 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방청시킬 권리 혹은 신뢰관계인 동석신청의 권리, 비디오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 과정을 촬영할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등

이 외에 법정 외에서 신문을 받을 권리,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권리,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재판의 결과를 알 권리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둡니다.

항고와 항소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1.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2. 피해자의 커다란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피해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4.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규범(순결 이데올로기, 성 이중규범)이나 편파적인 종교적인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6.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7.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예측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9.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13.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4.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15.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16.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교회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

교회 / 교단이 할일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4. 교단은 목회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5.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6. 교단은 교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시 누구나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교단 홈페이지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7. 교단은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

영하거나 후원해야 합니다.

8.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9.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10.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고 교회가 이를 실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 목회자의 성폭력 혹은 성적 일탈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 청빙 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증, 성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거나, 미혼 혹은 독신인 목사나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와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교회를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목회자 개인이 할일

1. 목회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여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남성들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평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신도들의 태도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3. 목회자 자신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홀로 심방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혼인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욕구나 친밀의 욕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원 – 예를 들어 선배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 –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도들은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며 교회는 분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미리 저장해 둠으로써 성적 비행을 예방합니다.
7.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숙지하여 자신과 신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8.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할일

1.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소에 여성의, 청소년의, 아동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2. 상담이나 심방 시에 목회자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삼갑니다.
3.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히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하는 성적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성적 남용, 즉 성폭력임을 확실히 인지합니다.
6.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두어 사건 발생 시 신고하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둡니다.
8. 교회와 교단 안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잘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9.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경우 무엇보다 피해교인에게 2차 가해를 삼가며, 가해자를 경계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0.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교회 안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합니다.

사회적으로 할일

1. 목회자 성폭력과 같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매매 등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4.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공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확장하고 가해자 선도와 치유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법 /

1. 우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과 연계하시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치유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 76쪽 이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참조)
2. 친구나 친지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3. 증거를 보전해 둡니다.
4.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5.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기관에 알립니다. (기획위원회 등)
– 개체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연회 등 상위 치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사회법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감독이 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6.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1] /

- 성희롱은 평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관리자로서

-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동료로서

- 평소 직장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

쓴다.

- 주변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직장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적극 개입하여 중지 시켜야 한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 항의한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게 한다.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 직장 자체적으로 성희롱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여성부 혹은 고용노동부에 시정신청,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한다.
- 사건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다. 일지 쓰기,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 두기 (성희롱 피해의 경우 옷 위에 묻은 지문도 채취가 가능하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해바라기 센터에 의뢰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 주변 직원과 공동대응, 고충전담창구의 상담요원 혹은 상급자, 기관 차원의 공식적 해결

행위자(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자신의 언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바로 사과한다.

/ 교회성폭력 대처 매뉴얼[2] /

성희롱 가해자 매뉴얼

1. 개인적 성찰의 차원

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판단은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하라. 피해자의 입장이 사건 해결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사과의 방식 : 빠른 사과로 일단락 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자숙과 반성의 시간 후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며 진심으로 사과해라. 한 번의 사과로 피해자가 마음이 풀리고 용서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③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들은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과해라.

④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⑤ 자신의 여성관이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책임져야 할 것들

① 법적(형법 · 민법, 교회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진다.
② 가해자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③ 피해자와 교회공동체에 사과하라.
④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라도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
⑤ 가족과 주변인들의 비난이나 낙인도 감수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무고하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탄원서를 써달라고 조름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고 비난을 돌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가해자 주변인 매뉴얼

1.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

1) 가해자에게

① 가해 행위를 옹호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표현 쓰지 않기
②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 하지 않기
③ 가해자의 말 · 행동이 왜 성폭력인지 알려주기
예) “상대에게서 분명하게 ‘YES’를 들었니?”
④ 성폭력의 성립 유무는 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받은 느낌에 있

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⑤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알려주기

⑥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합당한 징계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돕기

⑦ 내가 사과했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님을 알려주기

⑧ 이 사건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2) 주변인들에게(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지 않기

② 피해 사실을 확산하지 않기

③ 개인적 친분에 기인한 판단을 공유하지 않기

④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이나 공개수준 ·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 확보해주기

3) 피해자에게

① 섣부르게 중재하거나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지 않기

②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 캐묻지 않기

③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 “교회에 덕이 안 되니 조용히 넘어가자”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언제까지 분노를 품

을 거야? 분노를 품는 건 죄야." "네가 그럴만한 여지를 줬네." 등

2. 성폭력 가해를 목격했을 때

① 가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지시키고 경고하기

② 가해상황에 대한 녹화, 녹음 등의 증거 확보하기

③ 성적인 농담에 웃지 않기

④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하고, 피해자가 공론화를 결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 내에 공식적 기구 개설이나 교육 등을 건의하기

피해자 가이드

1.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한다.

①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 혼란스러움 등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② 성폭력 피해경험이 나의 신앙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와 성차별적인 구조와 조직의 문제다. 특히나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에는 다음을 기억해라! "목회자는 가부장적인 편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고, 권력이 집중된 목회자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한다. 특히나 '애정과 사랑의 표현'을 이유로 성폭력을 합리화하는 목회자를 경계하고, 그들의 말을 점검해봐야 한다."[3]

2.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① 피해 당사자인 '나'의 느낌과 경험을 믿는다.

② 내가 겪은 고통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③ 내 경험에서 내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④ 혹여나 법적으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성폭력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을 과신하지 말고, 나의 경험과 느낌, 감정을 신뢰하자!

3. 성폭력의 문제 해결의 '목표'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

① 피해자는 주체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로부터 시작된다.

②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다.

예시

- 나에게는 불안한 심리를 달래줄 상담이 필요하다.
- 나에게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인 정보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 나는 교회 안에서 가해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싶다.
- 나는 가해자가 저지른 만행을 공론화하고 싶다.
- 나와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 나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가족, 학교친구, 교회사람, 애인 등)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 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당당히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다.

(1) 원하는 목표를 향해가는 데 "방해되는 요인"을 반드시 검토하면서 '한계'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방해요인을 검토하는 시간은 사건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는 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반드시 맞서야 할 방해요인을 발견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진다."[4]

예시

- 가해자와 내가 아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
- 주변의 편견과 비난, 사건에 대한 무성한 소문
- 이 일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 가해자의 위협, 협박, 해코지
-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체력, 시간, 돈, 마음 에너지의 비용

②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계를 알아야 사건 해결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조바심내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할 것, 버릴 것을 아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다.

4. 내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지도력'이다.

① 정답은 없지만 전략은 있다! 일생에서 "잘한/아쉬운 대처방안"의 경험을 살려서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나름의 전략을 짠다.

예시

- **아쉬운 대처방안** : 나보다 윗사람이 나를 오해한 일이 있을 때 그 분이 무서워서 일단 잘못했다고 상황을 무마한 것 /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 / 부당한 일을 침묵하고 참고 넘어갔던 것 등
- **잘한 대처방안** :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 갈등이 있던 전도사와 담임목사님에게 당당하게 삼자대면을 요구한 것 / 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대자보를 쓴 경험 / 신뢰할 사람에게 솔직히 이야기한 것 /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등

② 그러나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서두르거나 강박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 해결의 속도와 방향은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꽤 긴 호흡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잘 돌본 후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때 일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5. 주변의 지지자원을 파악한다.

① 내가 믿을만한 사람과 단체, 전문기관을 파악한다.
중요한 건 문제해결의 주체는 지지자원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다. 과도하게 지지자원에 의존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한다."[5]

② 나를 포함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 3명이 되게

한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도서 4:12, 표준새번역)"

한 명은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한 명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③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넓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창세기 16:11, 13)"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20)"

6.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은 많은 감정적인 소모와 에너지가 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배분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시

포스트잇에 나를 격려하는 말 쓰기, 일기쓰기, 숨쉬기, 산책하기, 음악듣기, 기도하기, 힘이 되는 성경 말씀 기록하기 등등.

첨부

나만의 사건 해결 지도[6]

〈나만의 사건 해결 지도〉는 문제를 해결할 피해자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며,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유용했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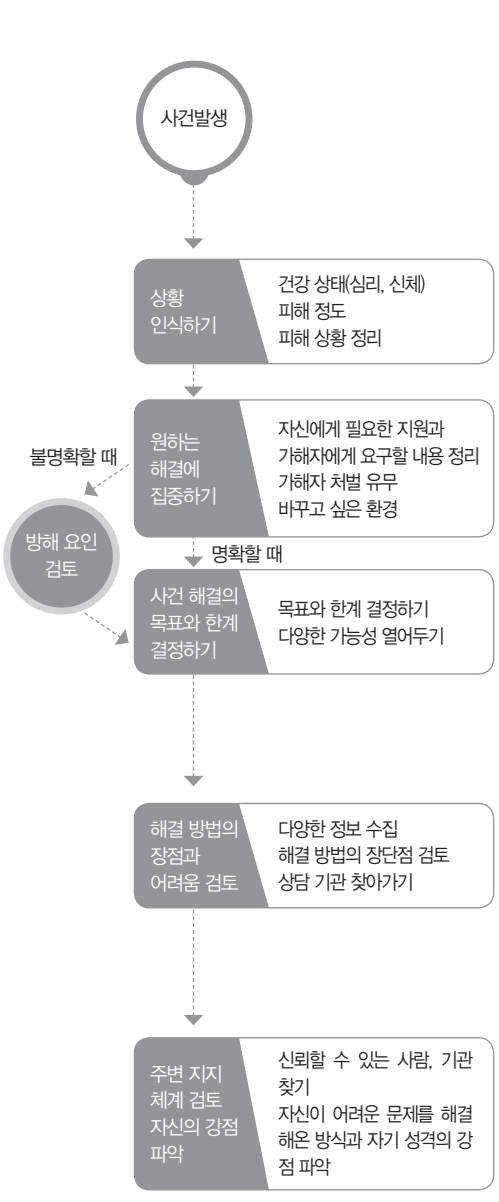

조언자, 상담자 구하기

- 상담원과 상담 기관은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쌓기
- 피해 시기, 장소, 당시 정황, 지속성, 의료적 조치 필요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증인, 증거 유무와 내용 알려주기

- 외상이 있는 경우 우선 산부인과, 외과 등 병원에서 치료 받기
- 건강 상태, 사회적 영향 등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살펴보기

- 심리적 지지, 심리 상담
- 법적, 의료적 지원
- 가해자의 사과
- 가해자 처벌, 공론화
- 소속 집단의 문화 바꾸기 등

- 자신에게 사건이 주는 의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 판단하기
- 사건 해결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체력, 정신력 고려하기
- 직장, 학교, 가족 등 주변 상황 고려하기
-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 고려하기

- 개인적 해결(사과문 받기, 합의 등)
- 법적 해결(근거 규정, 신고 기간, 공소 시효, 절차, 증거수집 가능성 등 고려)
- 비제도적 해결의 다양한 방법(자조 집단 참여 등)
- 소속 집단 안의 제도적 해결(학칙, 사규 등 활용)

- 친구, 가족, 선배, 교사, 상담사, 상담기관 등 나를 지지해줄 사람 찾기
- 과거 겪은 어려움과 견줘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이해하기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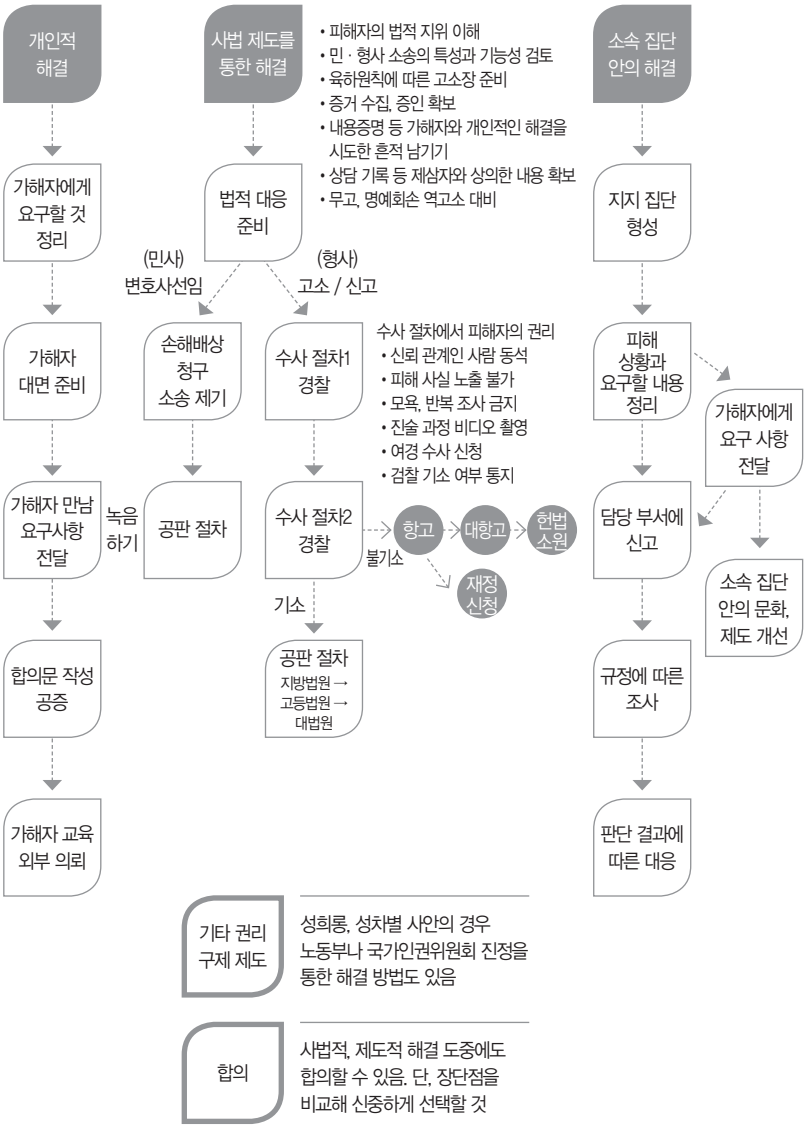

/ 교회 공동체 매뉴얼 /

1. 예방적 차원

① 목회자, 장로, 기획위원, 교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젠더 감수성 훈련(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젠더감수성 PDF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회에 SOS함(신고함)을 제작하여 누구든지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매뉴얼을 숙지한다. 목회자와 상담자는 의무적으로 고소 · 신고해야 한다는 점,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한 치리 절차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④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회 성폭력 정책 · 지침을 숙지하고, 교회 자체 내규를 마련한다.

⑤ 목회자 · 직원 고용시 성적 비행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서약을 받는다.

⑥ 민주적 의사소통 훈련, 갈등해결 훈련 등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화 분위기를 만든다.

⑦ 양성평등한 교회문화, 언어, 설교, 성경공부 등이 되도록 노력한다.

⑧ 목회적 상담이나 심방, 교육 등에서 목회자와 지도자가 지켜야 할 세부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교회 공동체에게 알린다.

예) 환자 심방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 먼저 물어보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성희롱 ·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이해나 용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③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다(재발될 경우, 어떤 절차와 치리가 존재하는지 상기시킨다).

④ 관련 당사자가 청소년일 경우, 더욱 세심한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다.

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교정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가해자 교정교육은 일반 상담과는 전혀 다르며, 모든 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 사건 해결적 차원

1) 가해자가 목회자가 아닌 경우

①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다른 속 · 셀 · 목장 · 소속으로 변경한다).

②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교회 출석에 대한 휴식을 권고한다.

③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④ 가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여 돌봄과 복귀를 지켜보며 지원한다(목회자 1명, 성도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가해자가 섣불리 공동체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되,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범방지교육을 반드시 포함한다.

⑥ 교회공동체는 피해자의 온전한 돌봄과 치유를 지원해야 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교회공동체는 이런 모든 처리과정을 공동체 전체의 젠더감수성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는다.

2)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① 목회자 성폭력은 권위의 남용이며 그 권위에 대한 감시의 부재로 발생한 사건임을 인지한다.

② 가해자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공개사과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이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기대어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을 재현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가해자가 담임목사(교회 · 기관의 대표)가 아닌 경우, 담임목사(교회 · 기관의 대표)는 책임자로서 교인(구성원)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엄중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④ "가해자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조처한다.

/ 목회 바로알기 십계명[7] /

1. 목회자도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믿지' 맙시다!
2. 목회자도 우리처럼 성적 존재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필수'입니다!
3. 목회자도 우리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의지는 서로에게 '해(害)'가 됩니다!

4.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듯 말하는 목회자의 권력욕을 경계합시다.
5. 목회 사역을 위한 성적 접촉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응답'을 근거로 접근해오는 목회자를 경계합시다.
6. 목회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능력이 더 발달되기 쉽습니다. 목회자의 발언을 맹신하지 맙시다.
7. 목회자는 가부장적인 편견을 가지고 목회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질문하고 주변사람들과 토론합시다.
8. 권력이 집중된 목회자는 타인을 통제하려 들기 쉽습니다. 개인의 생활과 생각이 목회자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9. 사랑의 표현은 강압적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애정'이라는 핑계로 목회자에게 강요당하지는 않는지 점검합시다.
10.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성폭력과 혐오가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그만하라고 요구합시다.

1 | 2001년과 2002년에 발행한 여성부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참고

2 | 2018년 공개워크숍 "하나님 가라사대 #Metoo" 참가자들이 구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교회성폭력TF팀이 수정하고 김민영 · 조중신 선생님의 수정 · 감수를 거쳐 보완된 교회성폭력대처 매뉴얼의 일부다.

3 | 목회자 바로 알기 10계명 중 "7, 8, 9계명 참고."

4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보통의 경험』 (이매진, 2011), 72.

5 | 『보통의 경험』, 74.

6 | 『보통의 경험』, 64-65. 본 지침서 69-70쪽 이미지는 재구성했다.

7 | 2005년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개정판)에 수록된 목사바로알기 십계명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성폭력대책소위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8차 총회 공식 채택 문서, 1999.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2005.
-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통의 경험』, 이매진, 2011.
- 여성부 성희롱예방교육자료, 2001, 2002.

| 교회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 상담전화 : 02-2266-8275
- 홈페이지 : www.8275.0rg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사무국 전화 : 02-364-1994
- 상담 전화 : 02-365-1994
- 이메일 : talktome@yourvoice.or.kr
- 홈페이지 : yourvoice.or.kr

| 성폭력 상담소 |

서울

1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3156-5463
2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38-8043
3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2
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5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통합)	02-2664-1366
6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070-8128-1366
7	벧엘케어상담소	02-896-0401, 8
8	꿈터성폭력상담소	02-6083-4971~2
9	(통합)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1704
10	꿈과희망상담센터	02-834-1366
11	행복한생명나무상담센터	02-824-4007

12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13	이레성폭력 상담소	02-3281-1366
14	서초성폭력상담소	02-599-7606
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5
16	다미안성폭력상담소	02-2248-5504
17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02-902-3356
18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02-3013-1399
19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2-2658-1366
20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

경기

1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통합)	031-232-7795
2	수원탁틴내일상담소	031-251-1516
3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51-2050
4	부천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032-328-9713
5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6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부천지회 부설 새부천성폭력상담소	032-612-1191
7	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6
8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031-413-9414
9	안산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031-419-1142
10	가톨릭여성상담소	031-415-0126 031-415-0117
11	정다운여성권익상담소	031-439-1366
12	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1-442-5385 031-466-1366
13	새남심리상담연구원부설 성폭력상담소	031-381-8540

14	평택성폭력상담소	031–618–1366 031–658–6614
15	광명YWCA부설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02–898–0731
16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31–396–0236
17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18	로뎀여성폭력상담소	031–764–0577 031–764–4577
19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031– 676–1366
20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6–1274
21	고양성폭력상담소	031–907–1003 031–907–5009
22	한마음가족상담센터	031–979–1367
23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031–558–1366
24	한국성건강센터	031–858–1366
25	동두천성폭력상담소	031–867–3100
26	사단법인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북부의정부 성폭력상담소	031–876–7544 031–876–7546
27	하나성폭력상담소	031–852–0142 031–853–4563
28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031–946–0396
29	양주성폭력상담소	031– 864–7545/6 031– 875–2033
30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31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	031–531–2821
32	연천 행복뜰 상담소	031–832–1317
33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031–641–0675
34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5–2526~7
35	의왕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031–462–1366
36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840–9203~4

|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

1	서울대학교병원	2072–2200	종로구 대학로 10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2	미애로여성의원	2233–6992	중구 다산로 11길 3	산부인과, 피부과
3	국립중앙의료원	2260–7114	중구 을지로 245	산부인과, 정신과 등 27개 과목
4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709–9114	용산구 대산관로11길 50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5	조은산부인과	2282–3088	성동구 독서당로 335	산부인과
6	한양대학교병원	2290–8114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5개 과목
7	건국대학교병원	2030–7124	광진구 능동로 120–1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3개 과목
8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958–2319	동대문구 왕산로 180	산부인과, 정신과 등 22개 과목
9	시립동부병원	920–9204	동대문구 무학로 124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과목
10	동대문구보건소	2127–5365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11	장스여성병원	490–4013	중랑구 망우로 411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과목

12	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276–7053	중랑구 신내로 316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13	열린산부인과	919–1446	성북구 정릉로 306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14	고려대안암병원	920–5849	성북구 인촌로 7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15	아가엄마 산부인과	999–8275	강북구 한천로 1041	산부인과, 소아과
16	한일병원	901–3252	도봉구 우이천로 30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950–1402	노원구 동일로 134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6개 과목
18	을지병원	970–8566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19	인정병원	309–0909–221	은평구 응암로 164	산부인과, 소아 정신과, 가정의학과
20	은혜산부인과	353–4307	은평구 진흥로 133	산부인과
21	은산부인과	359–7175	은평구 연서로 137 영진빌딩 4층	산부인과
22	청구성심병원	385–5511	은평구 통일로 873	응급의학, 소아청소년과 등 12개 과목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228–5045	서대문구 연세로 50–1	산부인과, 정신과 등 26개 과목

24	동신종합병원	396–9161	서대문구 연희로36길 32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2개 과목
25	이유명호한의원	719–4231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 2층	한방부인과 등 9개 과목
26	동교신경정신과	333–3572	마포구 신촌로 62	신경과, 정신과
27	진오비산부인과	3143–3595	마포구 신촌로 12 동우빌딩 2층	산부인과
28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2650–2611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29	유광사여성병원	1588–3006	강서구 강서로 194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30	봄빛정신과의원	2063–3705	강서구 공항대로 284 동서빌딩 203호	정신과, 신경과
31	구로성심병원	2067–1500	구로구 경인로 427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13개 과목
32	고려대구로병원	2626–2014	구로구 구로동로 14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33	조윤희산부인과	802–2525	금천구 시흥대로 212 2층	산부인과
34	희명병원	804–0002	금천구 시흥대로 244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2개 과목
35	이상태산부인과	842–0199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9	산부인과
36	김종률내과	831–1585	영등포구 신길로 34	내과
37	신학재외과	848–4654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외과

38	대명치과의원	841–1572	영등포구 영등포로 396	치과
39	중앙대학교병원	6299–1114	동작구 흑석로 102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5개 과목
40	보라매병원	840–2279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3개 과목
41	동작구보건소	820–9467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42	박언규 신경정신과	532–1283	동작구 동작대로 109	신경정신과
43	청화병원	815–3788	동작구 장승배기로 108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4	김석호내과의원	826–2777	동작구 상도로 91	내과
45	강남고려병원	874–8001	관악구 관악로 242	산부인과, 외과 등 8개 과목
46	양지병원	887–6001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1개 과목
4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1588–1511	서초구 반포대로 22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5개 과목
48	서울특별시 의료원	3430–0200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내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49	국립경찰병원	3400–1114	송파구 송이로 12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2개 과목
50	김현식산부인과	488–4011		산부인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정숙 홍보연 황창진
위　　원 | 김미령 김혜인 남궁희수 박찬수 서상교 손명희
안규현 안민주 양경모 엄일천 윤정미 이가온
이석구 이수현 주영숙 최건희 최소영 최순양

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발 행 일 | 2018년 7월
발 행 인 |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편 집 인 | 신현승 선교국 총무직무대리
편 집 기 획 |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디자인·인쇄 | 디자인통(02-2278-7764)
발 행 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홈 페 이 지 | www.kmc.or.kr